

서 면 답 변 서

질 의	우강호 위원	답 변	평창군수(부군수)
회 의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98.12. 1) (화)		
<p>〈 질의요지 〉</p> <p>○ 정화조 청소와 관련 과태료부과 범규</p>			

〈 답 변 〉

○ 별 첨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제 13 조의2(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의 설계·시공)</p> <p>①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7.3.7, 시행 97.9.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물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의 참여하에 시공을 하게 하여야 한다.</p> <p>제 14 조(오수정화시설 등의 운영·관리) ①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개정 97.3.7, 시행 97.9.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수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3.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오염되지 아니한 물로 회식하여 방류하는 행위 		<p>제 29 조(합병정화조의 설치 참여자) 법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

<p>②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성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제 30 조(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법 제1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할 것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3.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시설물에 설치된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선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자집영업 및 다방영업을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4.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킵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에 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5.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영
---	--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정화조 등의 관리) 조례 제18조제5항에 의거 정화조 등의 개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수 : 조 전체 및 각부의 변형, 파손으로 정화기능이 저하된 경우
2. 사용제한 : 정화조 청소를 장기간 하지않아 오물이 다량 퇴적되어 정화기능이 저하된 경우
3. 사용금지 : 조내에 가스의 누적으로 폭발위험성이 있거나 시설물의 파손으로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제8조(정화조 등의 청소) ①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명령 또는 통보는 내부청소시기의 15일 이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조 청소의 필요성
2. 정화조 청소요금
3. 청소시기
4. 청소업체 및 전화번호
5. 청소 불이행시 처분사항
6. 기타 청소안내에 필요한 사항

②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청소 기한안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기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내부청소 촉구서에는 청소촉구서의 도착일 1개월안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것임과 과태료납입기일후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청소를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청소에 관한 대집행(처리 용량이 10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경우에 한함)을 실시할것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정 정화조의 조치)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사실조사를 한후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100	300	500
(2) 처리용량이 10㎥ 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5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700	1,000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라.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대상)	500	1,000	1,000
6. 간이 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300	500	800
8.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0	300	500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제6항)	300	500	1,000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2항)	300	500	1,000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3항)	300	500	1,000
12.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	500	700	1,000
13.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	300	500	1,000